
입 법 정 보

2017-2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5
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국민안전처)	5
3.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국민안전처)	5
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 식품부)	6
5.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7
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7
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8
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9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10
10.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
1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
1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12
1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3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3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4
1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14
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5
19.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17
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17
21.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8
22. 축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8
2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9

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0
2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	20
2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20
28.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21
29.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1
30.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21
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2
3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3
33. 궤도운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3
34.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23
35.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24
36.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24
3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25
3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25
39.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6
40.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26
41. 민법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27
42.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8
4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8
44.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8
45.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9
4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29

4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29
4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30
4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30
50.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위원회)	31
51.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32
52.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32
53.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33
54.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33
55.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34
56.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34
57.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35
5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6
5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36
60.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37
6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38
62.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38
6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9
64.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39
65.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41

1.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1. 9. • 마감일자 : 2017. 1. 29.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휴관일 조정에 따라 전시품 관람규칙 중 휴관일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휴관일 조정(안 제2조 제1항)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정기휴관일에 월요일 폐지 및 1월 1일(기준), 설날, 추석을 휴관일로 지정

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1. 10. • 마감일자 : 2017. 2. 20.
-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법률 제14248호, 2017. 5. 29. 제정, 2017.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교육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 추진 실적 제출방법, 안전체험관 확충·운영 시 설치·운영 기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및 수준별 양성기관 지정, 안전교육사 시험의 시행·공고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인 실무경력 등(안 제2조)
나.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방법 등(안 제3조)
다.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무교육 시행기준 등(안 제4조)
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시행기준 등(안 제5조)
마.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및 별지서식 등(안 제6조)
바. 안전교육기관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안 제7조)
사. 안전교육을 위해 필요시 공공시설 이용신청 방법 등(안 제8조)
아.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위한 수준별 양성기관 지정 등(안 제9조)
자. 안전교육사 시험의 시행·공고 등(안 제10조~제14조)

3.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1. 10. • 마감일자 : 2017. 2. 20.

-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법률 제14248호, 2017. 5. 29. 제정, 2017.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교육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 추진 실적 제출방법, 안전체험관 확충·운영 시 설치·운영 기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및 수준별 양성기관 지정, 안전교육사 시험의 시행·공고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조건 및 등급부여 등(안 제2조)
 - 나. 안전교육기본계획의 변경 및 수립절차 등(안 제3조~제6조)
 -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시기 등을 규정함
 - 다. 안전체험관 확충·운영시 설치·운영기준 적용 등(안 제7조)
 - 라.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대상자 등(안 제8조)
 - 마.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및 실시 적용대상 설정근거 등(안 제9조)
 - 바.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대상 및 방법 등(안 제10조)
 - 사.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점검방법 등(안 제11조~제13조)
 - 아. 법률 제9조~제13조의 안전교육 실태점검 방법 등(안 제14조)
 - 자.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등(안 제16조~제22조)
 - 안전교육사의 자격역할, 시험방법과목, 안전교육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교육 등을 규정함

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1. 10. • 마감일자 : 2017. 1. 31.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6. 12. 2일 및 ' 16. 12. 27. 각각 공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되어 기존에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한 “간척지운영위원 ” 의 심의사항이 일부 삭제되고 위원장이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되고, 제 13조의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행위제한 사항 등이 일부 삭제되어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간척지 운영위원회” 의 위원구성과 행위제한 일부를 변경하고자함

○ 가. 간척지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위원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농어촌공사사장에서 이들 공사 소속 임직원 중 사장이 추천한 자로 변경(안 제6조제1항제3호~제4호)

나. 행위제한 사항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등의 행위 삭제

-행위제한 사항인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유어(遊漁),양식) 행위 삭제(안 제15조제1항제7호)

5.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7. 1. 10. • 마감일자 : 2017. 2. 20.

○ 등록·보존 등의 검토가 필요한 문화재가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법령으로는 등록문화재로서 보호할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보존 및 활용 등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조사 및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등록문화재의 직권 등록 조사 및 등록 절차 진행의 근거 마련(안 제35조제2항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조사 및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 10. • 마감일자 : 2017. 1. 20.

○ 법정 민원사무 처리기간 재정비 추진계획(안전행정부, ‘13.7.)에 따라 훈련기준 제안서의 처리기간을 단축(74일→60일)함으로써 훈련기준 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가. “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중 처리기간 단축”(안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1) (공단 → 고용노동부) 제안서 및 의견서 제출기간 단축(60일→50일, 안 제20조 제2항)

2) (고용노동부 → 공단)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여부 통보기간 단축(14일→10일, 안 제20조 제3항)

나. “훈련기준 제안서 서식 처리기간 변경” (74일→60일, 안 별지 제13호 서식)

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 10. • 마감일자 : 2017. 2. 20.

○ 2017년 말까지 지적확정측량을 민간에 이양토록 결정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안('15.5.27)의 후속조치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시행하는 지적확정측량을 제외하는 한편, 공간정보의 생산·활용에 기준이 되는 기본공간 정보가 합리적으로 선정되고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본공간정보의 정의를 새로이 마련하고 품질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공간정보 표준제·개정 등의 업무가 산업자원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공간정보표준의 고시, 표준지원기관의 지정 등 표준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의 사업관리와 운영을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가. 다른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활용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본공간정보”의 정의규정을 마련함 (안 제2조)

나.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절차에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5조제6호 및 제19조제1항)

다.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대상에 공간정보 표준의 연구·개발 및 운영을 추가함 (안 제10조제7호 신설)

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 범위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시행하는 측량 중 지적확정측량을 제외함
(안 제14조제4호 단서 신설)

마. 기본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와 정확성, 일관성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제4항 신설)

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국가공간정보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정보 표준의 연구·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지원기관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제5항 개정 및 제22조의2 신설)

사.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사업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28조제6항 신설)

아.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를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관리하도록 함 (안 제30조제1항)

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1. 10. • 마감일자 : 2017. 1. 31.

○ 석면으로 인한 어린이 등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학원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에 실내공기의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석면조사 실시 대상 학원건축물의 확대(안 별표 1의2 제3호너목 신설)

석면 피해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학원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학원의 경우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 기관으

로부터 석면건축자재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석면조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함.

나.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의 강화 등(안 제33조제1항제3호 신설, 안 별표 5 제2호바목)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1. 10. • 마감일자 : 2017. 1. 20.
- 기업의 고용을 수반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에 비례한 추가공제 금액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혼인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위하여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 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에 비례한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1퍼센트 포인트 인상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퍼센트 포인트를 각각 인상함.
- 나.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인원 1인당 공제금액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을 공제하던 것을 1인당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라. 종합소득금액 5천 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한 해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함

10.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 11. • 마감일자 : 2017. 2. 21.
- 안마원 내부에 탈의실과 세면·세족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안마원 이용자의 편의 및 위생 상태를 제고함과 아울러 안마원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안마원 이용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관련 [별표1]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 가. 안마원 내 부대시설로 탈의실과 세면·세족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나. 안마원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함 (탈의실 제외)

1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 11. • 마감일자 : 2017. 2. 20.
- 현행 시행규칙 별표7 및 별표8에 규정되어 있는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범칙금액이 하한과 상한만을 규정하고 특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권자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부과금액을 특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양정기준 정비(안 별표7, 별표8)
 - 현행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별 범칙금액이 하한과 상한으로 규정(예 :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된 것을 위반 인원·횟수·기간 등을

기준으로 범칙금액 특정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 11. • 마감일자 : 2017. 2. 20.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수립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대책의 일환으로 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 등 국내 주요 배출원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버스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되었는바, 법률에서 정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이외에 인가받지 않은 증차나 운행횟수 증회, 자동차 보험 미가입, 보조금 지급기준 위반의 경우도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 11. • 마감일자 : 2017. 2. 20.
- 현행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하한과 상한만을 규정하고 특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권자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부과금액을 특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하한과 상한으로 규정(예 :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된 것을

위반기간 또는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 특정

1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 11. ● 마감일자 : 2017. 2. 20.
- 현행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하한과 상한만을 규정하고 특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권자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부과금액을 특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2)
현행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하한과 상한으로 규정 (예 :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된 것을 위반기간 또는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 특정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 11. ● 마감일자 : 2017. 2. 20.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수립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대책의 일환으로 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 등 국내 주요 배출원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버스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되었는바, 법률에서 정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이외에 인가받지 않은 증차나 운행횟수 증회, 자동차 보험 미가입, 보조금 지급기준 위반의 경우도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 11. • 마감일자 : 2017. 2. 20.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수립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대책의 일환으로 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 등 국내 주요 배출원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버스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 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되었는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대상을 구체화 하고, 보조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구체화 (안 제21조의5 신설)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지급 대상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구체화 함.

나.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45조의2제9의2호 신설)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17.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 11. • 마감일자 : 2017. 2. 20.

○ 현행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하한과 상한만을 규정하고 특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권자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부과금액을 특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하한과 상한으로 규정(예 :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된 것을 위반기간 또는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 특정

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 11. • 마감일자 : 2017. 1. 9.
- 면세점 산업의 경쟁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심사 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대상과세관장이 체납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국내산업 보호 강화를 위해 수출자가 가격약속 위반 시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을 명확히 하고,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수출기업 등이 보세공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체납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위탁 대상 확대(안 제1조의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체납된 내국세등까지 세관장이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 나. 수입신고이후 거래가격 변경시 관세 과세가격 조정 허용(안 제16조)
수입신고 이후 물품의 거래가격을 국세의 정상가격에 따라 조정할 경우 잠정가격 신고를 허용함.
- 다. 관세관련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안 제42조, 제43조 및 제141조의3 외)
위원회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 및 공통 해촉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정비함.
- 라.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기간 연장 사유 명확화(안 제66조)
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 정하는 잠정조치의 부과기간 연장 가능 사유를 법령에 적시해 알기 쉽도록 함.
- 마. 덤핑방지관세 가격약속 위반 시 조치사항 명확화 등(안 제68조 및

제69조)

수출자가 가격약속을 위반할 경우 잠정조치의 적용 기간과 잠정조치 이후 확정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방법을 명확히 함.

바.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가 수정(안 제95조)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및 페로제도를 편익관세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아프가니스탄과 리베리아를 편익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사. 관세 사후관리 대상 물품 반입 기한 연장(안 제129조)

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입 지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개월 인 반입 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을 허용함.

아. 관세 불복청구의 소액사건 기준 신설(안 제149조의2 신설)

불복청구 시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가 확대되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청구금액 기준 3천만원 미만으로 정함.

자.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심사 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 강화(안 제192조의3 신설)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심사시 일정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남용 행위로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날부터 5년간 신규특허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

차. 보세공장에서 가능한 작업의 범위 확대(안 제199조)

보세공장에서 가능한 작업의 범위에 수리, 조립, 검사, 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함.

카. 지식재산권 신고 유효기간 등 상향 입법(안 제237조)

현재 관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지식재산권 신고의 유효기간 및 갱신신청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함.

타.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물품 통관보류기간 연장 사유 추가(안 제239조)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물품에 대해 무역위원회에 조사가 신청된 경우 통관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파.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에 품질등에 대한 허위·오인 표시 추가(안 제245조)

품질 등을 허위 또는 오인 표시한 수입물품은 이미 통관이 완료된 후

에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도록 세관장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함.

하. 밀수출 우려물품에 대한 특정장소 반입의무 부과(안 제246조의2 신설)
도난·밀수출 우려가 높거나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해 수출
신고 전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도록 함.

거. 로열젤리에 대한 간이세율 인하 조정(안 별표 2)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로열젤리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에 따라 간이세율을 인하함.

너.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안 별표 3)

채납자 보유재산 확인 등을 위해 관세청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선박·항
공기에 대한 취득세 자료, 법원행정처로부터 부동산 관련 자료, 금융회
사등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받도록 함

19.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 11. • 마감일자 : 2017. 1. 31.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
용되나, 이와 중복·배치되는 규정이 있어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혼선 및 국민 불편이 초래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규정 삭제 (제15조제3항부
터 제5항까지)

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 업통상지원부)

- 예고일자 : 2017. 1. 11. • 마감일자 : 2017. 2. 2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6.12.29)에 따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동반성장 주간의 법적 근거
가 마련됨에 따라 동반성장 주간을 명시하기 위함
- 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
단의 명칭에 농어업이 추가(법 제20조)됨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

나. 동반성장 주간의 법적 근거가 마련(제20조의3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동반성장 주간을 11월 첫째 주로 명시(제13조의2 신설)

21.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1. 11. • 마감일자 : 2017. 2. 20.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16.12.28)으로 수입인지 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 수입인지 판매자는 전자수입인지 판매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컴퓨터 등 장비를 갖추어 두고, 주소 및 성명을 변경하거나 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또는 한국은행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2.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1. 11. • 마감일자 : 2017. 1. 31.
- 그 동안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 변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사업의 농업경제지주회사로의 이관 등으로 법률관계의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축산부문 고정자산의 소유주체를 농협중앙회로 하고 농협중앙회에 농업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하는 등 일부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 (부칙 제3조 개정)

23.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7. 1. 12. • 마감일자 : 2017. 2. 21.
-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창조경제 중심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단장 및 부단장의 인원 수를 조정 하고, 단장 위촉 자격에서 문화 관련 분

야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

2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7. 1. 29. • 마감일자 : 2017. 2. 21.
- 온 오프라인을 통한 성매매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의 대화화면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추가 규정하고 공무원이 숙박업 등을 하는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442호, 2017.12.20. 공포, 2017.6.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온라인 게시문구 내용에 ‘성매매 관련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구 규정(별표 3 개정)
- 법에서 위임한 ‘숙박업’, ‘목욕장업’ 및 ‘식품접객업’의 범위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 * (숙박업) 숙박업.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업 제외
 - * (목욕장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 * (식품접객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5.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1. 12. • 마감일자 : 2017. 2. 21.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경영체 등록신청을 하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2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중소기업청)

- 예고일자 : 2017. 1. 12. • 마감일자 : 2017. 2. 21.
- 운영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리가 소홀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고자 지정해제 요건을 추가신설 하고자 함
- 가. 특구 운영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연속 3회 이상 부진특구로 평가 받은 경우 지정 해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 신설(제27조②항의 3 신설)

2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1. 13. • 마감일자 : 2017. 1. 19.
-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항공교통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항공교통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항공교통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고, 항공교통센터를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하는 한편, 통계청의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통계청 감사담당 인력 가운데 총 5명(경인지방통계청 5급 1명, 동북지방통계청 8급 1명, 호남지방통계청 7급 1명, 남지방통계청 6급 1명, 충청지방통계청 8급 1명)을 통계청으로 재배치 하고, 한국농수산대의 입학정원 확대에 따라 교원 11명 및 행정지원 인력 3명(5급1, 6

급1, 농촌지도사1)을 증원하며,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총 26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 2017년 1분기 소요정원 57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8.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1. 13. • 마감일자 : 2017. 2. 22.
- 지자체 자율성 및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국가직공무원 최소화 추세에 따라 소방교육관할이 인천시만 해당되고, 설치 시 국비가 투입되지 않은 인천소방학교장의 직급을 기존 국가직 ‘소방정’에서 지방직인 ‘지방소방정’으로 하여 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장의 직급 별표 1에 다음 내용의 예외 규정 신설(안 제3조의제1항 [별표1])
 - [별표 1] 비고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인천소방학교장의 직급은 지방소방정으로 할 수 있다.

29.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 13. • 마감일자 : 2017. 2. 22.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중 재정성과 부분을 재무제표 내용과 유사하게 하고, 의사결정 참여회의를 간소화하여 제출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통계청 업종 분류를 채택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0.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1. 13. • 마감일자 : 2017. 1. 23.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등에 대한 부패방지교육의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교육기획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청렴연수원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으로 개발된 ‘국민생각함’의 운영 인력 1명(5급 1명)과 국민권익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 2명(전문경력관 가군 2명)을 각각 증원하며, 부패신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방지국장 소관의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접수 사무를 소속기관인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이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국민권익위원회 정원에서 소속기관 정원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교육기획과장과 일부 기능의 조정이 필요한 청렴총괄과장,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장 및 민원 신고 심사과장의 분장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증원 또는 이체 조정된 인원을 직급·직렬별로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전직렬 1명의 직급을 9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직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1. 16. • 마감일자 : 2017. 2. 6.
-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헌마1206, 2016.10.27선고)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가. 인터넷신문의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 중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취재 및 편집 인력요건 삭제(안 제2조 제1항 제1호 개정 및 가목, 나목 삭제)
- 나.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 시 상시고용 증빙서류 삭제(안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삭제)

다. 이 영 시행 전에 인터넷신문 등록을 한 자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1년 유예기간조항 삭제(부칙(2015.11.11. 대통령령 제 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삭제)

라.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1호)

3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 16. • 마감일자 : 2017. 2. 6.
- 궤도운송법 개정시 산악벽지형 궤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면서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함
- 가. 산악벽지와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조의 2)

33.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 16. • 마감일자 : 2017. 2. 6.
- 궤도운송법 개정시 산악벽지형 궤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함
- 가.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절차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조의 2)
- 나. 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8조의 2)

34.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 16. • 마감일자 : 2017. 2. 6.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나, 이와 중복·배치되는 규정이 있어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혼선 및 국민 불편이 초래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규정 삭제 (제16조제3항부

터 제5항까지)

35.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1. 17. • 마감일자 : 2017. 2. 27.
-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시행령」 등 93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총 93개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함

36.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 예고일자 : 2017. 1. 17. • 마감일자 : 2017. 1. 24.
- 농촌진흥청에 농업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익성 최적화 모델 개발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농자재 안전·유통 및 시험기관 관리강화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농업과학원에 상시 가뭄 대비 토양수분 연구, 농업인 안전보건, 작물표현체 분석시설 운영 및 식품성분 표준 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 9명(연구관 1명, 연구사 8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7. 2. . 공포·시행)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차 산업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7. 2.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30호, 2016. 7. 12. 공포, 2017. 1. 1. 시행)으로 농촌진

홍청에서 유기농업자재의 공시·품질인증 등의 업무 담당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정원 중 기계운영서기보 정원 1명을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 17. • 마감일자 : 2017. 2. 6.
- 현행법은 자녀가 출생신고가 되어있음을 전제로 인지 신고서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민법 개정안에는 출생 미신고 자녀에 대한 ‘허가에 따른 생부의 인지’ 규정이 신설되는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인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허가에 따른 생부의 인지’ 는 출생 미신고 자녀에 대한 임의인지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안 제55조제3항 신설)

3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 17. • 마감일자 : 2017. 2. 27.
 - 최근 발생한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도로교통법상 보호자가 미동승한 채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신고의무 위반 포함)에 한하여 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보호자가 동승하였으나 유아 보호에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주·정차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치원에 대한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미약한 측면이 있음. 이에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된 유아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사고의 범위를 확대

하여 통학버스 관련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유아가 피해(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관할청은 유치원이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제53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에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함(안 제32조 제3항).

39.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1. 17. • 마감일자 : 2017. 2. 27.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폭력·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사업의 위탁 대상 기관을 지정하고 신고 및 상담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신고 및 상담사업의 위탁 대상 기관 지정 및 위탁기관의 공보 고시 조항 신설(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4조의 2)
- 나. 신고 및 상담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조항 신설(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4조의 3)

40.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 17. • 마감일자 : 2017. 2. 6.
- 민법 개정안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및 제855조의2 제1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는 가사소송법상 상대방 없는 비송사건이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설된 비송사건의 관할을 정함
위 비송절차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던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배제하는 것이므로, 전 남편의 절차적 이익을

- 보장하기 위해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진술청취 규정을 신설함
-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를 가사소송법상 가사비송 라 류 사건으로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2호가목 7)의2 및 7)의3 신설)
 -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사건의 관할을 자녀의 주소 지 가정법원으로 함(안 제44조 제3의2호 신설)
 - 가정법원이 ‘친생부인의 허가’ 나 ‘인지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 우 전 남편과 그 후견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진술청취 절차를 신설 함(안 제45조의8)

4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 17. • 마감일자 : 2017. 2. 6.
- 헌법재판소는 혼인 종료 후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아무런 예외 없이 그 자녀를 전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여 친생부인의 소 를 거쳐야만 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시하며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 후 3백일 이내 출생 한 자녀를 혼인 중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 치 결정함(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 그 취지에 부합하게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친생추정을 배 제하는 단서를 신설
- 전(前) 남편의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단서 신설(안 제844조 제3항)
-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현행대로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되(민법 개정안 제844조 제3항 본문 신설), 혈액형검사, 유전자검사 등 검사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 정에 비추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하여 아래와 같이 ‘모 또 는 전 남편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 (민법 개정안 제854조의2 신설)나 ‘허가에 따른 생부의 인지’ (민법 개정안 제855조의2 신설) 등 법원 의 허가를 받은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도 전남편의 친생 추정을 배제(민법 개정안 제844조 제3항 단서 신설)할 수 있도록 함

42. 「민국은행 정부유기증권 취급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1. 18. • 마감일자 : 2017. 2. 27.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되고('14.8월) 주민번호 수집 근거 법령의 범위에 시행규칙이 제외 (' 16.3월)됨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 별지 1)
나.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 별지 2)
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 별지 3)

4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고일자 : 2017. 1. 18. • 마감일자 : 2017. 1. 24.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화시설 설치 등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8년 6월 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공공건축추진단의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운전서기보 1명을 운전주사보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44. 「정부유기증권 취급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1. 18. • 마감일자 : 2017. 2. 27.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되고('14.8월) 주민번호 수집 근거 법령의 범위에 시행규칙이 제외 (' 16.3월)됨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제3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을 삭제

45.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1. 18. • 마감일자 : 2017. 2. 28.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 분석 연구기관이 식품 등에 대한 시험 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354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4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1. 18. • 마감일자 : 2017. 2. 7.
-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하 ‘질서법’)이 ‘08. 6월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아직 남아 있는 질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선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 삭제(안 제36조 제3항, 제4항, 제5항 삭제)
과태료 관련 이의제기 기간, 재판절차, 체납처분절차 준용 조항 삭제

4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1. 18. • 마감일자 : 2017. 2. 7.
-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하 ‘질서법’)이 ‘08. 6월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어, 「게임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에 아직 남아 있는 질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선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 삭제(안 제48조 제3항, 제4항, 제5항 삭제)

과태료 관련 이의제기 기간, 재판절차, 체납처분절차 준용 조항 삭제

48. 국방부의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1. 18. • 마감일자 : 2017. 1. 23.

- 군 공항 이전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군사시설기획관이 겸임하던 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 별도 고위 공무원을 보하고, 이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을 증원하며, 군공항 이전사업 대외 협력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을 증원하며, 한시적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군공항이전사업단을 2020년 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0000호, 2017. 00. 00.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4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1. 18. • 마감일자 : 2017. 1. 26.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구조를 최근경제상황변화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 타 법에서 인용한 저축가입제한기준(소득기준) 전환(안 제2조 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시행(‘15.7.1)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제한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동 법률 제2조 제6호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동 법률 제2조 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전환하고자 함.

- 나. 저축납입한도 증액 및 납입한도 차별폐지(안 제4조 제1항)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상 목돈마련저축의 납입한도가 일반 농어민은 연간 144만원으로 저소득 농어민은 연간 120만원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납입한도를 연간 240만원으로 증액하고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간의 납입한도 구분을 폐지하고자 함.

다. 저축장려금 지급을 하향조정(안 제11조 제1호 및 제2호)

저축납입한도가 현행보다 증액하더라도 재정부담이 현 수준에서 증가하지 않도록 장려금 지급율을 하향조정하도록 함

라. 자발적 중도해지 장려금 지급을 하향조정(안 제11조 제3호 및 제3의 2호)

가입 3년 이후 자발적으로 목돈마련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만기금리와 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려금 지급율을 동일한 비율로 하향조정하도록 함

마. 특별중도해지 장려금 지급을 하향조정 및 특별중도해지사유에서 해외이주를 제외(안 제11조 제4호)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금번 개편되는 저축 장려금 만기이자율과 동일한 지급율을 적용하고, 해외이주를 특별중도해지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함.

50.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1. 18. ● 마감일자 : 2017. 1. 31.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사성폐기물안전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은 증원하며, 원전 해체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규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고리원전지역사무소의 현장규제 강화를 위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한시조직의 직급별 정원과 분장사무를 반영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소수 하위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전직 9급 정원 1명을 운전직 7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51.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7. 1. 19. • 마감일자 : 2017. 1. 26.
- 미래창조과학부에 달탐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바이오분야 범부처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범부처 연구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연구개발 사업 기술성 평가 및 출연연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빅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방송채널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공용주파수 수급체계 보강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재난 재해 대응 기능 보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 고출력전자파(EMP) 안전성 평가 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 7급 1),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대응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6급 1, 7급 2명)을 증원하고, 국립중앙과학관에 신설되는 자연사전전문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의 특별 감사업무 확대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하며, 일부 부서의 업무를 현행화시키는 것임

52.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 예고일자 : 2017. 1. 4 • 마감일자 : 2017. 2. 13.
- 지역통계 표준화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조직(+2과)의 업무 분장 내역 및 한시조직에 배정된 인력(9명)의 계급별 정원을 정하고,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증원된 인력(11명)의 계급별 정원을 정하며, 지방청 7급 팀장의 역할강화 등을 위한 ±19명의 직급상향 내용을 반영하고, 등록센서스과를 인구총조사과에 통합, 농

어업동향과 신설 및 지방청 감사인력 이체 등의 기능을 조정 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53.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청)

- 예고일자 : 2017. 1. 19. • 마감일자 : 2017. 1. 24.
- 국가보훈처에 현충시설의 국가 직접건립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1명(6급 1명)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나라사랑교육 및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호국영웅선양 전담인력으로 5명(7급 4명, 8급1명)을 증원하고, 경기동부지역과 충남동부지역에 각각 보훈지청을 신설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2명, 5급 5명, 9급2명)을 증원하되 경기동부보훈지청의 보훈과·보상과·복지과 및 충남동부보훈지청의 보훈과·보상과를 2019년 0월 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지청의 관할구역 및 증원되는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는 인력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일부 상향 조정된 정원을 원래 직급으로 환원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4.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1. 19. • 마감일자 : 2017. 2. 3.
- 저출산 극복 및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해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시 그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확대 반영하는 한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육아휴직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인정범위 확대(안 제31조의6) 승진부담 없이 육아와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둘째자녀 대상 육아

휴직 시 경력평정 대상기간 인정범위를 확대(1년 → 3년)함

나. 근속승진기간 단축(안 제33조의2)

승진적체 심화에 따른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과 성과를 창출하고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들의 승진확대를 위해 계급별 근속승진기간을 각각 6개월에서 1년까지 단축(7→6급 1년 단축, 8→7급 및 9→8급 6개월 단축)함

55.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 예고일자 : 2017. 1. 19. • 마감일자 : 2017. 1. 23.
-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효율적 수립 운영을 위한 지원 인력을 보강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자산형성 사업 운영 인력과 의료지원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청소년 지도 및 시설 관리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동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본부 증원(별표 1, 별표 1의2)
 - 통일정책실 6급 1명
- 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증원(별표 4)
 - 5급 1명, 6급 1명
- 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증원(별표 7의3)
 - 7급 2명

56.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 예고일자 : 2017. 1. 19. • 마감일자 : 2017. 1. 24.
- 특허심사처리기간 유지 및 특허심사 품질제고를 위하여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를 적정화하고, 위조상품 증가와 상품 분류체계 전환 및 국제상품 분류 개정 대응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필요한 인력 33명(5급 1명, 6급 3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

포 및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소요정원 증원(안 별표1, 별표2)

특허심사처리기간 유지 및 특허심사 품질제고 등을 위한 특허 심사인력 30명(6급) 증원

위조상품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위조상품 단속인력 2명(6급) 증원

상품 분류체계 전환 및 국제상품 분류 개정 대응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상품분류 담당인력 1명(5급) 증원

나. 직급조정 반영(안 별표1, 별표2)

등록 방식심사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국제출원 방식심사인력 1명(직급조정(6급→5급 1명))

일반직 편입 구 기능직(운전직) 직급조정 1명(9급→7급 1명)

관리운영직의 일반직 전환자 1명(관리운영9급→7급 1명)

다. 일반직 편입 구 기능직(운전직) 정원 일부를 복수직렬로 변경 (안 별표2, 별표7, 별표8)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청 운전직 정원 1명(8급 1명)과 특허청 서울사무소 운전직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복수직렬로 변경

57. 고용노동부외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 19. • 마감일자 : 2017. 1. 26.
- 고용노동부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일자리정책평가과를 신설하여 일자리정책 총괄·조정·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고용노동부에 지역·산업 맞춤형 고용정책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산업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 고용노동정책에 관한 홍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지진 등 재난안전관리분야의 업무전담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능력수급

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 6명(7급 6명)을 증원하며, 노동위원회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를 신설하여 울산지역의 노·사간 권리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정책평가과 신설 등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별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신설에 따라 사무국 운영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5급 1명을 이체하며, 방호직 1명과 운전직 4명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5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 19. • 마감일자 : 2017. 2. 3.
- 법학전문대학원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함
- 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에 대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개별 대학별로 승인한 인원만큼 다음 학년도에 정원 외 충원 가능 (안 제6조 제2항)
- 나.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폐지함(안 부칙 제2조)

5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인)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 19. • 마감일자 : 2017. 2. 28.
- 이중제재 해소를 위해 등록취소 사유를 세분화(행위능력 결격사유와 그 외를 구분)하여 피성년·한정 후견인, 파산, 미성년자의 사유로 등록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 자격위원

회로 “통합” 하고, 별칙 적용시 외부위원들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별칙을 적용하려는 것임

60.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 예고일자 : 2017. 1. 20. • 마감일자 : 2017. 1. 25.

- 관세청에 2019년 0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신설하여 관세국경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3명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관세청의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으로 조정하여 재배정하며, 관세청에 2019년 0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총액인건비제 정보개발팀을 신설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개발 및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2명(4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수출입물품 안전관리 협업검사의 인력보강을 위해 인천세관에 3명(6급 3명), 부산세관에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관세평가분류원에 2019년 0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품목분류4과를 신설하여 한 중 FTA 발효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신청에 대응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을 증원하며, 광주세관에 2019년 0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여 FTA 컨설팅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김해공항 여객터미널 확장에 따라 김해공항세관에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3명)을 증원하며, 인천신항 컨테이너검색기 도입에 따라 인천세관에 3명(7급 1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며,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의 중형 X-ray 검색기 운영을 위하여 인천세관에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환전업 관리 감독권 이관에 따라 관세청에 1명(6급 1명), 세관관서에 6명(6급 1명, 7급 5명)을 증원하며, 관리대상화물 검사를 위하여 인천세관에 2명(6급 1명, 8급 1명), 평택세관에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인천공항 기탁화물 X-ray 검색 강화를 위하여 인천세관에 4명(전문경력관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세부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세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12명(9급 12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12명)으로 조정하며, 관세직 정원 4명(9급 4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4명(전문경력관 다군 4명)으로 전환하며, 하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방호직 등 8명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인)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1. 20. • 마감일자 : 2017. 1. 31.
- 국가현안 및 사회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연관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제출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조직진단 기법 개발등 조직진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다수부처 협업형 직제개정 요구절차 도입(안 제8조제5항)
 - 1) 개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직제개정 요구가 가능하던 것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나. 조직관리 전문기관 지정(안 제27조의2제2항및 제3항)
 - 1) 조직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조직진단 기법 연구·개발, 해외동향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62. 산업통상자원부의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1. 20. • 마감일자 : 2017. 1. 24.
-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인기 개발 등 항공분야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스마트공장확산추진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전자상거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흥지역 해외진출 확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WTO 통상분쟁 대응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기체결된 FTA 개선·후속협상 이행에 필요

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가기술표준원에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안전점검 강화 및 지진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재안전분야 전담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 . . 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하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전직 2명 직급을 상향조정(9급 2명 → 8급 1명, 6급 1명)하고,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민간위탁 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내 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할 부서를 창조행정담당관으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 20. • 마감일자 : 2017. 3. 2.
- 법 제2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 지정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64.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 예고일자 : 2017. 1. 20. • 마감일자 : 2017. 1. 25.
-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중량세무서를, 대전지

방국세청에 세종세무서를, 부산지방국세청에 해운대세무서를, 광주지방국세청의 서광주세무서에 광산지서를, 부산지방국세청의 제주세무서에 서귀포지서를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4급 3명, 5급 8명)을 증원하는 한편, 각 신설 세무서의 4개과를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 정원 12명(5급 12명)을 증원하며, 인천 및 경기서북부 지역의 납세자 권리 보호 제고를 위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납세자보호2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명(4·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세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고양세무서 개인납세2과·부산진세무서 개인납세3과 및 나주세무서 세원관리과를 폐지하고, 남양주세무서 개인납세3과·나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및 나주세무서 개인 납세과를 각각 신설하며, 유관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 등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3·4급에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4급에서 3·4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소수직렬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방호직 9급 8명을 방호직 6급 1명, 방호직 7급 3명, 방호직 8급 4명으로, 운전직 9급 7명을 운전직 7급 3명, 운전직 8급 4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국세청에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시행에 따라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세무조사 포렌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4명, 7급 8명, 8급 4명), 세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필요한 인력 20명(7급 4명, 8급 8명, 9급 8명), 전화응답률 제고를 위해 국세상담센터 상담인력 8명(6급 1명, 7급 7명)을 각각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지방세무관서 정원 중 4급 1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고, 국세청과 지방세무관서 간 정원 1명을 상호이체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5.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1. 20. • 마감일자 : 2017. 1. 25.
- 국립산림과학원에 특수임산자원 가공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1, 연구사1)을 증원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휴양림 운영 및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7급1)을 증원하며, 국립수목원에 DMZ 일원의 산림생물 연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의 직급별 인력을 반영하려는 것임